

여행업 약관

수배여행계약 부

* 이 자료는 일본어 원본에서 번역되었습니다. 다소 번역이 일본어와 다를 경우에는 일본어가 정확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 당사가 여행자와 체결하는 수배여행계약은 이 약관이 규정한 내용에 근거합니다.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여행자에게 불이익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체결한 경우,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이 특약이 우선됩니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약관에서 “수배여행계약”이라 함은 여행자의 위탁을 받아 여행자가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및 기타 여행관련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당사가 고객을 위해 대리, 매개 또는 중개의 방법으로 이와 관련한 수배를 담당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라 함은 일본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여행을 말하며 “해외여행”이라 함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3 이 약관에서 “여행대금”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해, 운임, 숙박료 및 기타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불하는 비용 및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취급요금(변경수수료 및 취소수수료 제외)을 말합니다.

4 이 부에서 “통신계약”이라 함은 당사가 제휴한 신용카드회사(이하 “제휴회사”라고 한다)의 카드회원이 전화, 우편, FAX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 신청하여 체결한 수배여행계약으로, 수배여행계약 상의 여행대금 등과 관련한 여행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지불함에 있어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날 이후에 별도로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함을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제16조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여행대금 등을 지불함을 내용으로 하는 수배여행계약을 말합니다.

5 이 부에서 “전자승낙통지”라 함은 계약 신청에 대한 승낙 통지로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중 당사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FAX장치, TELEX 또는 전화기(이하 “전자계산기 등”이라 한다)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등을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이 약관에서 “카드이용일”이라 함은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에 근거한 여행대금 등의 지불 또는 환불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수배채무의 종료)

제3조 당사가 올바른 관리자 의식을 가지고 여행서비스를 수배했을 때에는 수배여행계약에 근거한 당사의 채무 이행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원, 휴업, 조건부적합 등의 사유로 운송·숙박기관 등과 여행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가 그 의무를 다했을 시에는 여행자는 소정의 여행업무취급요금(이하 “취급요금”이라 한다)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운송·숙박기관 등과 여행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음을 통지한 날을 카드이용일로 간주합니다.

(수배 대행자)

제4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외 타 여행업자 및 수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자, 기타 보조인에게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

(계약신청)

제5조 당사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양식의 신청서에 소정 사항을 기입하여 당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의 계약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회원번호 및 희망하는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당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계약금은 여행대금, 취소요금 기타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전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계약체결의 거부)

제6조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을 경우

2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중, 여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무효 등과 같은 사유로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과 관련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휴사의 카드회원 규약에 따른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

제7조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1항의 계약금을 수리한 시점에 성립됩니다.

2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당사가 제5조 제2항의 신청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신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단, 해당 계약에 대해 전자승낙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해당 통지가 도착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성립에 관한 특칙)

제8조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당사는 서면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 지불 없이 계약체결 승낙만으로 수배여행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수배여행계약의 성립시기는 전항의 서면 상에 명확히 합니다.

(승차권 및 숙박권 등에 관한 특칙)

제9조 제5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당사는 운송서비스 또는 숙박서비스의 수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배여행계약으로서, 여행대금을 대신하여 해당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구두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당사가 계약체결을 승낙한 시점에 수배여행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서면)

제10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 한다)을 교부합니다. 단, 당사가 수배하는 모든 여행서비스에 대해 승차권류, 숙박권, 기타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항 본문 상의 계약서면을 교부한 경우,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에 근거하여 수배할 의무가 있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계약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따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1조 당사는 여행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계약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제공했을 때에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설치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항의 경우,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설치된 파일(해당 여행자용으로만 제공)에 기재사항을 기록하여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제

(계약내용의 변경)

제12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해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 수배여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행자의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전항의 여행자의 요청으로 수배여행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미 완료된 수배사항을 취소하기 위해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취소요금·위약금 및 기타 수배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또한, 당사가 정한 소정의 변경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해당 수배여행계약의 내용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행대금의 상승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그 책임이 귀속됩니다.

(여행자에 의한 임의 해제)

제13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수배여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여행자는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 대금과 아직 제공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와 관련한 취소요금, 위약금, 기타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해 이미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당사가 정한 소정의 변경수수료 및 당사가 얻기로 되어 있는 취급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제14조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ㄱ 여행자가 소정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ㄴ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무효 등과 같은 사유로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과 관련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채휴사의 카드회원 규약에 따른 결제가 불가능해 졌을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여행자는 아직 제공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와 관련한 취소요금, 위약금, 기타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해 이미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당사가 정한 소정의 취소수수료 및 당사가 얻기로 되어 있는 취급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제15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서비스를 수배하지 못했을 경우 여행자는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의 대가로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해 이미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제외한 여행대금을 여행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

3 전항의 규정은 당사에 대한 여행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4장 여행대금

(여행대금)

제16조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 당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여행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는 소정 카드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제휴회사 카드로 여행대금 등을 결제합니다. 이 경우, 카드이용일은 당사가确定的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여행자에게 통보한 날이 됩니다.

3 당사는 여행개시 전, 운송·숙박기관 등의 운임·요금의 개정, 환율시세의 변동, 기타 사유로 여행대금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해당 여행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여행대금의 증가분 및 감소분은 여행자에게 귀속됩니다.

5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장 또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해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는 소정 카드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제휴회사 카드로 해당 비용 등을 결제합니다. 이 경우, 카드이용일은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의 액수 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 당사가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이 됩니다. 단,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당사가 정한 지불방법으로 당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행대금의 정산)

제17조 당사는 여행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해 운송·숙박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여행자 부담분 및 취급요금(이하 “정산여행대금”이라 한다)과 이미 여행대금으로 영수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여행 종료 후 2항 및 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여행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2 정산여행대금이 여행대금으로 이미 영수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해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정산여행대금이 여행대금으로 이미 영수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차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수배

(단체·그룹 수배)

제18조 당사는 동일 여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 한다)를 정하여 신청한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 본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책임자)

제19조 특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책임자는 해당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수배여행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진다고 간주하고, 당사는 해당 계약책임자와의 사이에서 해당 단체·그룹에 관한 거래 및 제22조 제1항의 업무를 이행합니다.

2 계약책임자는 당사에 대해 당사가 정한 날까지 구성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원수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해 현재에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계약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미리 선임한 구성원을 여행 개시 후의 계약책임자로 간주합니다.

(계약성립 특칙)

제20조 당사는 계약책임자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계약금 지불 없이 수배여행계약 체결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금 지불 없이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당사가 해당 서면을 교부한 시점에 수배여행계약이 성립됩니다.

(구성원 변경)

제21조 계약책임자가 구성원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전항의 변경으로 인한 여행대금의 상승 및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이드 서비스)

제22조 당사는 계약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단체·그룹에 가이드를 동행하게 함으로써 가이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가이드가 제공하는 가이드서비스의 내용은 사전에 정해진 여행일정 상 단체·그룹행동을 위해 필요한 업무입니다.

3 원칙적으로 가이드가 가이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는 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4 당사가 가이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계약책임자는 소정의 가이드서비스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6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23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근거 수배를 대행시킨 자(이하 “수배대행자”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손해발생 익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전항의 내용을 제외하고,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3 당사는 수하물에 대해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손해발생 익일부터 기산하여, 국내여행의 경우 14일 이내, 해외여행의 경우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해 여행자 1인당 15만엔을 한도(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경우를 제외합니다)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24조 여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권리의무 및 기타 수배여행계약 내용에 대해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기 위해, 만일 서비스의 내용이 계약서면과 다르다고 인식될 경우 그 내용을 당사 및 당사의 수배대행자, 해당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장 변제업무 보증금

(변제업무 보증금)

제25조 당사는 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도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3-3)의 보증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 당사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원은 그 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관해 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보증보험에서 25,000만 엔까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여행업법 제22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근거, 사단법인 여행업협회에 대해 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영업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